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3. (생략) 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3. (현행과 같음) 4. <u>트러스트다이내믹코리아30퇴직연금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9. (생략) 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9. (현행과 같음) 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(현행과 같음) 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p>